44 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피부혈관육종

성별 남성 나이 56세 직종 자동차도장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4년 10월 26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부서에서 도장 작업자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3일 우측 이마와 측두부의 피부병변을 주소로 대 학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간에 전이를 동반한 피부의 혈관육종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5년 6월 20일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은 근로자의 피부의 혈관육종이 장기간 도장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유해한 화학물 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여 2015년 12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2월 24일 근로복 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 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24세 때인 1984년에 입사하여 2015년 3월까지 약 30년 4개월 동안 자동 차 보수도장 작업을 하였다.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은 하처리 단계→하도장 단계→상도 장 단계→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 지로, 2004년 7월경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작업량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전체 근로자 142명 중 현재 도장 작업자는 6명이나 과거에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도장 작업자가 40명 정도일 때도 있었다고 한 다. 현재는 작업량이 월 평균 약 300대, 입고 대수가 가장 많은 월요일은 하루 평균 13대 정도이다.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5년 3월 3일 우측 이마와 측두부의 피부병변을 주소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간에 전이를 동반한 피부의 혈관육종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5년 6월 20일 사망하였다. 과거력으로 2012년 9월 우측 경부에 종괴를 주소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림프선염을 진단받고 퇴원하였다. 이 외 특이 과거력은 없다.

근로자는 1984년에 입사하여 약 30년 4개월간 자동차보수도장 작업자로 도장 및 도료제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은 만성 림프부종과 치료 목적의 방사선조사 외에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원인은 없다. 근로자는 약 30년 4개월간 도장 작업을 하면서 도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피부혈관육종과 도장작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그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피부혈관육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끝.



암 외 질환

